

보도자료



2020년 2월 4일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기술정책과 과 장 김상경(044-201-2451), 연구관 안형근(2457)/ 제공일: 2월 3일(총 11매)
식품산업정책과 과 장 이시혜(044-201-2111), 사무관 정찬민(2121)
농촌정책과 과 장 전한영(044-201-1511), 사무관 김준현(1518)

걱정없이 농사짓고 안심하고 소비하는 나라

농식품부, 2020년 연구개발 사업 시행계획 통합 공고 - 혁신 성장과 농정 현안 해결을 위해 542억원 신규과제 지원 -

《 주 요 내 용 》

◆ 2020년 농식품부 연구개발사업 통합공고 개요

- 목적 : 올해 지원할 『농식품 연구개발 사업』의 시행계획을 통합 공고하여 연구자 등에게 사전 공지
- 사업 및 예산규모 : 가축질병대응기술개발, 첨단농기계산업화 기술개발 사업 등 15개 사업에 542억 원 지원
- 공고 시기 : 2020년 1/4분기~2/4분기(사업별 상이)
- 지원 대상 : 농산업체, 대학, 출연연, 기업, 생산자단체 등
- 사업 공고 : 농식품부 및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누리집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는 2월 4일(화), '20년도 농식품 연구개발 사업 시행계획을 통합 공고하였다.

○ 올해 지원할 농식품 연구개발 사업은 총 15개 사업에 542억 원이며 이 중, '20년부터 신규로 추진하는 사업은 5개 사업*에 총 209억 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 유용농생명자원산업화기술개발, 작물바이러스 및 병해충대응산업화 기술개발, 첨단농기계산업화기술개발, 농촌현안해결리빙랩, 농업에너지자립형산업모델개발 등

○ 이번 통합공고에는 총 15개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지원내용,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추진일정 등이 포함되며, 정부 연구개발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연구자나 농산업현장 관계자 누구나 사업을 신청할 수 있도록 상세한 지원계획을 담고 있다.

□ 사업별 공모방식, 공고일정 및 지원규모는 다음과 같다.

(단위 : 백만원)

사업명	공모방식	사업공고	평가선정	지원예산	비고
농축산물안전유통소비기술개발 *(내역) 위해성분제어/신뢰성강화/역매칭사업	지정공모	2월 상순	3월 중순	533	-
	자유응모	2월 상순	3월 중순	2,357	역매칭사업 등
첨단생산기술개발 *(내역) ICT 융복합	지정공모	2월 상순	3월 중순	1,845	-
농축산자재산업화기술개발 *(내역) 에너지절감/환경부하저감/노동력절감	지정공모	2월 상순	3월 중순	1,357	-
	자유응모	2월 상순	3월 중순	1,000	에너지절감/노동력절감
농식품연구성과후속지원 *(내역) 국가연구개발성과후속지원	자유응모	2월 상순	3월 중순	1,810	-
가축질병대응기술개발 *(내역) 진단예방/검역방역/확산방지 사후관리/동물의약품 등	지정공모	2월 상순	3월 중순	4,071	-
	자유응모	2월 상순	3월 중순	1,553	검역방역/동물의약품 등
1세대 스마트 플랜트팜	지정공모	2월 하순	4월 상순	5,000	-
	자유응모	2월 하순	4월 상순	2,767	분야지정
1세대 스마트 애니멀팜	지정공모	2월 하순	4월 상순	2,000	-
	자유응모	2월 하순	4월 상순	1,884	분야지정
수출비즈니스 전략모델 구축	지정공모	5월 상순	6월 중순	2,037	-

사업명	공모방식	사업공고	평가선정	지원예산	비고
* (내역) 수출전략/신시장 개척	자유응모	5월 상순	6월 중순	582	수출전략/신시장개척
맞춤형 혁신식품 및 천연안심소재 기술개발	지정공모	2.3	3월 상순	1,760	-
* (내역) 혁신식품/안심소재	자유응모	2.3	3월 상순	1,150	혁신식품
농업기반 및 재해대응 기술개발	지정공모	2월 상순	3월 상순	1,538	-
(신규) 유용농생명자원산업화 기술개발	자유응모	2월 상순	3월 중순	3,398	분야지정
(신규) 작물바이러스 및 병해충대응 산업화 기술개발	지정공모	2월 상순	3월 중순	3,370	-
* (내역) 방제기술/진단기술	자유응모	2월 상순	3월 중순	1,000	방제기술
(신규) 첨단농기계산업화 기술개발	지정공모	2월 상순	3월 중순	3,825	-
* (내역) 산업혁신기술/성능고도화	자유응모	2월 상순	3월 중순	2,000	산업혁신/성능고도화
(신규) 농촌 현안해결 리빙랩프로젝트	자유응모	2월 하순	3월 하순	1,500	제목지정
* (내역) 시설기반개선/생활환경개선	자유응모	2월 하순	3월 하순	1,500	제목지정
(신규) 농업에너지 자립형산업모델 기술개발	지정공모	3월 상순	4월 상순	4,825	-
* (내역) 에너지생산/에너지저장	자유응모	3월 상순	4월 상순	1,000	분야지정
합계 : 15개 사업				54,162	

□ 이번 통합공고 안내사항은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누리집 (www.ipet.re.kr) 등을 통해 제공 중이며,

○ 앞으로 추진 일정에 따른 사업별로 공고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누리집(www.mafra.go.kr), 농림식품 연구개발사업 통합정보서비스 (www.fris.go.kr)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 농식품분야 국내외 연구동향, 특히, 기술사업화 등 관련 자료는 농림축산식품기술사업화종합정보망(www.nati.or.kr)에서 확인 가능

□ 농식품부 윤동진 농업생명정책관은 “앞으로 농업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 애로사항을 꼼꼼히 챙겨 국민들이 연구 성과를 실생활에서 체감하고, 농업의 지속가능한 성장 사다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0년도 농림축산식품 연구개발사업 시행계획 통합 공고

「2020년도 농림축산식품 연구개발사업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통합 공고합니다.

2020년 2월 4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1 공고 개요

□ 공고규모 : '20년 정부출연금 542억 원 이내

(단위 : 백만원)

사업명	추진방식	사업공고	평가선정	지원예산	비고
농축산물안전유통소비기술개발 *(내역) 위해성분제어/신뢰성강화/역매칭사업	지정공모	2월 상순	3월 중순	533	-
	자유응모	2월 상순	3월 중순	2,357	역매칭사업 등
첨단생산기술개발 *(내역) ICT 융복합	지정공모	2월 상순	3월 중순	1,845	-
농축산자재산업화기술개발 *(내역) 에너지절감/환경부하저감/노동력절감	지정공모	2월 상순	3월 중순	1,357	-
	자유응모	2월 상순	3월 중순	1,000	에너지절감/노동력절감
농식품연구성과후속지원	자유응모	2월 상순	3월 중순	1,810	-
가축질병대응기술개발 *(내역) 진단예방/검역방역/확산방지 사후관리/동물의약품 등	지정공모	2월 상순	3월 중순	4,071	-
	자유응모	2월 상순	3월 중순	1,553	검역방역/동물의약품 등
1세대 스마트 플랜트팜	지정공모	2월 하순	4월 상순	5,000	-
	자유응모	2월 하순	4월 상순	2,767	분야지정
1세대 스마트 애니멀팜	지정공모	2월 하순	4월 상순	2,000	-
	자유응모	2월 하순	4월 상순	1,884	분야지정

사업명	추진방식	사업공고	평가선정	지원예산	비고
수출비즈니스 전략모델 구축 *(내역) 수출전략/신시장 개척	지정공모	5월 상순	6월 중순	2,037	-
	자유응모	5월 상순	6월 중순	582	수출전략/ 신시장개척
맞춤형혁신식품 및 천연안심소재 기술개발 *(내역) 혁신식품/안심소재	지정공모	2.3	3월 상순	1,760	-
	자유응모	2.3	3월 상순	1,150	혁신식품
농업기반 및 재해대응 기술개발	지정공모	2월 상순	3월 상순	1,538	-
(신규) 유용농생명자원산업화기술개발	자유응모	2월 상순	3월 중순	3,398	분야지정
(신규) 작물바이러스 및 병해충대응 산업화 기술개발 *(내역) 방제기술/진단기술	지정공모	2월 상순	3월 중순	3,370	-
	자유응모	2월 상순	3월 중순	1,000	방제기술
(신규) 첨단농기계산업화 기술개발 *(내역) 산업혁신기술/성능고도화	지정공모	2월 상순	3월 중순	3,825	-
	자유응모	2월 상순	3월 중순	2,000	산업혁신/ 성능고도화
(신규) 농촌 현안해결 리빙랩프로젝트 *(내역) 시설기반개선/생활환경개선	자유응모	2월 하순	3월 하순	1,500	제목지정
(신규) 농업에너지 자립형산업모델 기술개발 *(내역) 에너지생산/에너지저장	지정공모	3월 상순	4월 상순	4,825	-
	자유응모	3월 상순	4월 상순	1,000	분야지정
합계 : 15개 사업				54,162	

* 상황에 따라 일부 변동 가능

2 신청 자격 및 제한

□ 연구기관 신청자격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 국·공립연구기관
-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연구기관
- 「정부출연 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 연구기관 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 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 연구기관

-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 「민법」이나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인 연구기관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와 제19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
- 농림축산식품과학기술 분야의 연구인력을 1명 이상 상시 확보하고 있는 기관 및 단체 또는 연구소*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

□ 연구책임자 신청자격

- 주관·세부·협동·위탁·공동연구책임자는 각각 해당 주관·협동·위탁·공동연구기관에 재직 중인 자로서 연구경험과 연구능력을 갖추어야 함
- * 연구책임자는 연구기간 중 정년퇴임, 임기만료, 장기 해외연수 등으로 인하여 연구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아야 함
- 단,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기업지원연구직 연구원이 기업에 파견되어 상근으로 근무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업에 소속된 연구원으로 신청가능

□ 연구자 및 연구기관의 참여제한

- 연구책임자(주관·협동·세부)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국가연구개발과제는 최대 3개, 연구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과제는 최대 5개 이내로 제한되므로 이를 초과하여 신청할 수 없음
- * 단, 예외사항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32조제2항 참조
- 신청 마감일 전날까지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기간이 끝나지 않은 연구자 및 연구기관은 참여할 수 없음
- * 관련규정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참여제한 기간 및 사업비 환수 기준)

-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율 초과 제한
 - 국가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연구책임자 및 연구원의 참여율은 10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음
 -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 등 인건비가 100퍼센트 확보되지 않는 기관의 연구책임자 및 연구원의 참여율은 130퍼센트까지 계상 가능(실제 인건비 지급은 10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음)
 - 학생연구원은 참여율 100퍼센트를 기준으로 정규수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해당과제 참여율을 계상함
- 연구개발사업별 신청자격
 - 사업별 특성에 따른 제한이 있을 수 있으므로 개별 연구개발사업별 공고문 반드시 참조

3

신청방법 및 절차

- 신청방법
 - 반드시 주관연구책임자의 아이디어로 농림식품 R&D 통합정보서비스 (FRIS, <http://www.fris.go.kr>)에 접속하여 온라인 접수(우편, 인편접수 불가)
 - 신청절차 : FRIS 접속→로그인→농식품부사업 참여하기 클릭→과제접수→신청내용 입력→신청서류 업로드→접수완료→접수증 수령
 - 신청 시 응모하고자 하는 사업명과 과제명 확인 필수
 - 신청마감일 18시 전까지 접수를 완료하여야 하며 마감시간 이후 접수 또는 신청서 수정 불가(마감시간 18시 이후 접속 차단)
 - ※ 신청마감일에 온라인 접속자가 많을 경우 접수가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마감 2~3일전 접수 완료를 권장(접수완료 후에도 마감시간까지는 수정 가능)

□ 제출서류 : 사업별 공고 시 공고문 참조

※ 과제 유형 및 특성에 따라 추가적으로 필수 제출서류 등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사업별 공고문 반드시 참조

□ 신청서 작성 시 유의사항

※ 과제 유형 및 특성에 따라 변경 가능하므로 사업별 공고문 반드시 참조

○ 청년인력 의무채용 준수

- (청년인력 의무채용) 과제에 참여하는 기업의 연구비 중 정부출연금 총액이 5억 원 이상인 기업은 정부출연금 5억 원당 1명의 비율로 만 18세 이상 34세 이하의 참여연구원을 필수적으로 신규 채용

* 채용 후 24개월 이상 고용 유지 및 24개월 이상 과제참여 필수(협약 시 해당 인력의 인건비를 현물로 계상하여야 하며 고용 조건 미이행 시 해당 인력의 인건비 현물 계상액 전액을 현금으로 회수 조치함)

- (참여기업 현금부담 완화) 과제에 참여하는 중소·중견기업이 만 18세 이상 34세 이하의 참여연구원을 신규 채용(공고일 기준 6개월 이내 고용 포함)할 경우 해당 인건비만큼 현금부담금을 현물로 대체 가능

* 총 정부출연금이 5억 원 이상인 기업이 의무채용한 연구원의 인건비는 대상에서 제외

○ 연구수행기간 구성

- 신규연구과제는 농식품 R&D 예산 사정에 따라 1차년도 연구기간은 협약시점부터 9개월까지의 기간을 산정하여 연구내용 및 연구비 배정

- 차년도 연구기간은 매년 12개월을 연구기간으로 산정

* 연차별 연구기간을 감안하여 연구내용 및 연구비 조정

○ 기술료 및 매출액, 고용창출 등 산업화 성과목표 제시

- 개발된 기술의 기술(이전)실시 및 산업화를 통해 연구수행 중 또는 종료 후에 달성 가능한 기술료 및 매출액, 고용창출 등을 연구성과목표로 제시
- 연구기간 중에 신규 인력을 채용하는 경우 중간·최종 평가에서 가점 부여 예정

○ 참여기업의 연구개발비 부담기준 준수

구분	기업부담금	현금부담금
대기업	총 연구개발비의 50% 이상	기업부담금의 15% 이상
중견기업	총 연구개발비의 40% 이상	기업부담금의 13% 이상
중소기업	총 연구개발비의 25% 이상	기업부담금의 10%이상
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 (중소기업 규모)	총 연구개발비의 20% 이상	기업부담금의 10%이상
참여기업이 복합적으로 구성된 경우		
대기업 비율이 1/3 이하인 경우	총 연구개발비의 40% 이상	기업부담금의 13% 이상
중소기업 비율이 2/3 이상인 경우	총 연구개발비의 25% 이상	기업부담금의 10% 이상
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 (중소기업규모) 비율이 2/3이상인 경우	총 연구개발비의 20% 이상	기업부담금의 10%이상
그 밖의 경우	총 연구개발비의 50% 이상	기업부담금의 15% 이상

* 총 연구개발비 = 정부출연금 + 기업부담금

* 상세한 기준은 「농림축산식품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별표 2. 참여기업 연구개발비 부담기준 참고

○ 연구개발과제의 보안등급 선택

- 연구개발과제의 보안등급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4조4에 따라 보안과제와 일반과제로 분류

○ 연구장비 및 시설 도입기준 준수

- 3천만 원 이상의 연구장비 및 시설을 구입·구축하고자 하는 과제는 신청 시 붙임 3의 연구장비예산심의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함
- 선정평가 시 또는 협약체결 이전에 연구시설·장비 도입의 타당성 등에 대한 심의결과에 따라 연구시설·장비 도입여부 및 예산이 조정될 수 있음

* 상세한 심의기준 및 심의항목 등은 「국가연구시설장비관리 표준지침」 참조

4

세부사업별 공고

□ 연구개발사업별 공고문 게재

- 통합공고문의 공고 개요에 따른 사업별 추진일정에 따라 아래의 홈페이지 등에서 공고 확인 가능

* 농림축산식품부(www.mafra.go.kr),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홈페이지(www.ipet.re.kr), 농림식품 연구개발사업 통합정보서비스(www.fris.g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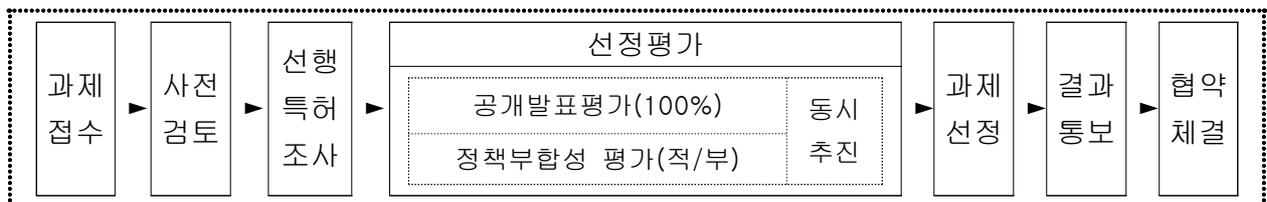
5

선정기준 및 절차

□ 선정기준 : 「농림축산식품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16조(연구개발 과제의 선정) 및 「농림축산식품 연구개발사업 관리기준」 제2절 연구 개발과제의 평가·선정

□ 선정절차

- 「농림축산식품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16조에도 불구하고 정책 부합성평가, 공개발표평가를 동시에 실시(필요 시 서면평가 추가 가능)



* 개별 연구개발사업별 평가절차와 관련된 세부사항은 본 통합공고 또는 추후 공고되는 연구개발사업별 개별 공고문 반드시 참조

□ 선정 시 우대사항(접수 마감일 기준)

- 「농림축산식품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별표 1에 의한 가·감점 기준 적용

6

문의처 및 기타

□ 관련규정 :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농림축산식품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농림축산식품 연구개발사업 관리기준」 등

□ 다음의 경우 사전검토 시 또는 선정 시에 제외됨

- ① 연구책임자 및 연구기관이 신청자격에 부적합한 경우
- ② 필수제출서류를 미제출한 경우
- ③ 연구책임자 및 연구기관이 참여제한 등으로 사업참여에 부적정한 경우
- ④ 신청한 연구개발계획서 내용이 공고 사항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 ⑤ 연구개발계획서를 허위로 기재한 경우
- ⑥ 제안한 연구계획서에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제1항에 따른 연구부정행위가 있는 경우
- ⑦ 공고된 신청방법 및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

□ 접수된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문의처 :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사업명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식품기술 기획평가원	연락처 (061-338-)
농축산물안전유통소비기술개발	과학기술정책과	농생명사업실	9764
첨단생산기술개발	과학기술정책과	첨단가축질병팀	9781
농축산자재산업화기술개발	과학기술정책과	첨단가축질병팀	9783
농식품연구성과후속지원	과학기술정책과	수출사업화팀	9793
가축질병대응기술개발	과학기술정책과	첨단가축질병팀	9782
1세대 스마트 플랜트팜 산업화기술개발	과학기술정책과	첨단가축질병팀	9782
1세대 스마트 애니멀팜 산업화기술개발	과학기술정책과	첨단가축질병팀	9782
농식품 수출비즈니스 전략모델 구축	과학기술정책과	수출사업화팀	9792
맞춤형혁신식품 및 천연안심소재 기술개발	식품산업정책과	식품사업실	9774
농업기반 및 재해대응 기술개발	농촌정책과	농생명사업실	9765
유용농생명자원 산업화 기술개발	과학기술정책과	농생명사업실	9765
작물바이러스 및 병해충대응 산업화 기술개발	과학기술정책과	농생명사업실	9765
첨단농기계 산업화 기술개발	과학기술정책과	첨단가축질병팀	9784
농촌 현안해결 리빙랩 프로젝트	과학기술정책과	식품사업실	9774
농업에너지 자립형산업모델 기술개발	과학기술정책과	수출사업화팀	9793